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4027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464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40278 판결

### 전 문

원 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B

피 고 C연합회

변론 종결 2020. 6. 2.

판결 선고 2020. 7.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4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9. 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이라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자이고,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택시'이라 한다)의 공제조합자이다.

나. 2009. 11. 25. 원고 버스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삼양사거리방면에서 길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택시가 H초등학교 사거리 진입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버스가 운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여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에 원고 버스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함으로써 원고 버스에 탑승 중이던 소외 I 이 원고 버스 내에서 넘어져, 제2,3 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우측 손목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위 I 을 상대로 I의 손해액 중 일실수입, 교통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인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63660호)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I의 과실 10%를 참작하여 원고의 I 에 대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지급채무는 '12,565,708원과 이에 대한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I 이 항소했으나(같은 법원 2018나18121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I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56,995,637원을, 위 판결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금으로 17,843,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I과의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2,371,3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택시가 기여한 정도는 70%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제금과 소송비용의 합계 77,210,330원 중 피고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4,04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택시가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버스가 스스로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운전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제동한 과실과 원고버스 운전자 J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와 피고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공동하여 1 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직접 구상권을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담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3) 원고가 1에게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의 각 손해배상금으로 74,838,937원을 지급하였고, 1에 대한 소송의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2,371,393원이 소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의 각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의 범위 내이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1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며, 위 소송비용 전부는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피고 택시의 보험사인 피고 역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합계 77,210,330원(= 74,838,937원 + 2,371,393원) 중 위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구상권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던 도중에 원고 버스가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거의 바로 제동을 한 점, 피고 택시가 제동한 장소는 교차로를 벗어나자마자 위치한 횡단보도 근처로서 원고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쉬운 곳은 아닌 점, 피고 택시 운전자는 정상적인 도로 진행 도중 비상등을 미리 점멸하지도 않고 제동을 한 점, 피고 택시 운전자는 원고 버스를 추월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자신이 급히 제동할 경우 뒤따르던 원고 버스도 급히 제동할 것과 버스 안에는 보통 승객들이 안전벨트도 없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각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하면, 그 과실비율은 피고

택시 70%, 원고 버스 3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공제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합계 54,047,230원(=77,210,330원 × 70%)과 이에 대하여 그 공제금 지급일 및 소송비용액 확정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정훈